

「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구미시장

2. 제안이유

-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구미시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적용 (안 제3조)
-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안 제4조)
- 재난업무 담당국장을 단장으로 15명 이내의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 (안 제5조)
- 위험도 평가결과는 3등급으로 구분하고 해당 시설물에 부착 또는 표시 (안 제8조)
- 위험도 평가활동에 따른 관련 보험에 가입 및 각종 경비지원 (안 제11조 및 제12조)

4. 참고사항

-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지진발생으로 인한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3조는 시설물의 적용범위를, 안 제4조는 위험도 평가 및 실시 여부 판단 등을, 안 제5조는 재난업무 담당국장을 단장으로 15명 이내의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을, 안 제8조는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을,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위험도 평가활동에 따른 관련 보험에 가입 및 각종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우리시가 지진발생 위험이 낮은 지역이기는 하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고자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신속하게 피해시설물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